

1. 개정이유

무선방식 소방용품 품목(시각경보기, 경종)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기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개정 (안 제3조제19의 2호·제20호, 제3조의2, 제16조제20호·제21호)
- 나.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제품표기 (안 제3조제21호, 제16조제22호)
-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mm"를 "밀리미터(mm)"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을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동적"을 "자동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

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장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가목 중 "감지기·중계기·수신기·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감지기·중계기·수신기·발신기간의 화재신호·화재정보신호 및 경종·시각경보장치·중계기·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 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전지"를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

시각정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정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시각정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덮개"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lx인"을 "룩스(lx)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주음향장치용의"를 "주음향장치용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산한"을 "합산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을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옴인"을 "옴(Ω)인"으로, " μs "를 "마이크로 세컨드(μs)"로, "Hz로"를 "헤르츠(Hz)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
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
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
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
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 발생을 감지하여 <u>당해</u>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 ----- <u>해당</u> ----- ----- ----- ----- -----.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u>방식의</u> 것을 말한다.	11. ----- ----- <u>방식인</u> ----- -----.
제3조(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및 기능) ----- ----- -----.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u>아니하여야</u>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 ----- <u>않아</u> ----- <u>야</u> -----. ----- -----.

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
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 11. (생 략)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
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
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
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
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중계기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
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
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
는 규격

14.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
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

----- 않아야 -

-----.

5. ~ 11. (현행과 같음)

12. -----

----- 방폭
형인 -----
않을 -----.

13.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도시가스사업
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
격

14. -----

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 (생 략)

나. 지구음향장치를 올리게
하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
작하지 아니하는 한 울림
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
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
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
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14호 나목 및 다
목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
지인 무선식 중계기는 제외한
다.

가. (생 략)

나.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
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조
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다. ----- 줄 ---

---- 않아야 -----.

15. -----

----- 않는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마련한 -----
-----.

다. (생 략)

라.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지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 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생 략)

16. (생 략)

17.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다. (현행과 같음)

라. -----
- 자동적-----

-----.

마. -----

----- 값을
말한다-----

-----.

바.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17. -----

----- 않는 -----

중계기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나. (생략)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
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계기의 주전원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다. (생략)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
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
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충
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
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
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줄 -----

----- 않아야 -----.

18. -----
-----.

가. ----- 사용
해서는 안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 -----

----- 않는 -----

----- 않을 -----.

마. -----

-----.

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
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
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생 략)

<신 설>

20. 무선식 중계기는 다음 각 목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중
계기·수신기·발신기 간
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
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
하고 개설했 수 있는 무선
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 제7조(특정소출력무
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

--- 않는 -----

-----.

바. -----

----- 마련-----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
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
하여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
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
-----.

가. ----- 감지기·중계
기·수신기·발신기간의
화재신호·화재정보신호
및 경종·시각경보장치·
중계기·수신기간의 정보
작동신호-----

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생략)

<신설>

제3조의2(무선식 중계기의 기능)

①·② (생략)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
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
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가. ~ 바. (생략)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
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생략)

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나. (현행과 같음)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
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
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
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무선식 중계기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

-----.

1. -----
-- 동등한 수준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의 -----

아. (현행과 같음)

2. -----

에는 무선식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 해당 -----

-----.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신 설>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
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
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
우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제3조의3제3항, 「시각
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
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
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중계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 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시각경보장치·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동등한 수준이
상-----.

1. 스위치

가. (생략)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

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
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
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
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
야 한다.

라. (생략)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
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
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
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
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2. ----

<삭 제>

<삭 제>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

.

그 밖

바. 주위의 밝기가 300 lx 인

바. _____ 룩스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lx)인 ----- ----- ----- -----.
3. 전자계전기	3. -----
가. <u>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u>	<삭 제>
나. <u>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u>	<삭 제>
다. <u>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u>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u>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u>	6.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u>	나. ----- -----

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dB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
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
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
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
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
다.

7. 예비전원

가. ~ 바. 삭 제

사. · 아. (생 략)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
지의 상온 충 ·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
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음향장치용인 -----
-----.

-----.

다. -----

합산한 -----

----- 않아야 -----
-----.

7. -----

사. · 아. (현행과 같음)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상은 충·방전시험은 축전지를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 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pm 2^{\circ}\text{C}$ 및 $50\pm 2^{\circ}\text{C}$ 의 조건에서 $1/20\text{ C}$ 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pm 2^{\circ}\text{C}$ 및 $50\pm 2^{\circ}\text{C}$ 의 조건에서

-----.

차.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

-----.

카.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타. (생략)	타. (현행과 같음)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변압기	<삭제>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정격1차 전압은 300 V이하로 한다.	
다.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중 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pm 20\%$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제5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 -----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한다. 다만, 중계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중계기
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
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
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
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다만, 화
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부속장치) 중계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
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수시험) 방수형 중계기
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
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pm 2)^\circ$ 각도의 방향에
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

----- 않아야 ---
-----.

-----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 -
-----.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

--- 않아야 -----.

1. (현행과 같음)
2. ----- 연결되는 -----

않는 -----.

제7조(부속장치) -----
----- 주는 -----
----- 않아야 -----.

제11조(방수시험) -----

위쪽-----

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충격전압시험) 중계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Ω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μ s,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생략)

제14조의2(충격시험) 중계기는 두께 20 mm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kg 직경 51 mm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mm의 높이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

--.

제14조(충격전압시험) -----

--.

1. ----- 옴(Ω)인 -----
----- 마이크로 세컨드(μ s)-----
----- 헤르츠(Hz)로 -----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충격시험) -----

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4조의3(진동시험) ① 중계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 5. (생략)

② 중계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 5. (생략)

제16조(표시) 중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4호와 제 1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않아야 -----

-----.

제14조의3(진동시험) ① -----

----- 따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
----- 따른 -----

-----.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시) -----

-----.

-----.

1. ~ 7. (생략) 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 1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u> <u>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u>	1. ~ 7. (현행과 같음) 8. ----- ----- ----- <u>한정함</u>----- --- 9. ~ 19. (현행과 같음) <u>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u> <u>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u> <u>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u> <u>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u> <u>제18조(재검토기한) -----</u> ----- -----
--	--

시에 대하여 <u>2017년 12월 1일</u>	----- <u>2022년 7월 1일</u> --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3년째의 <u>11월 30일</u> 까지를 말한	----- <u>6월 30일</u> -----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